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,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,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화물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으로 보도록 함(안 제11조, 제11조의2).
-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함(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).
-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(안 제34조의6 신설).
-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(안 제34조의7 신설).
-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의8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명확화(안 제34조의7제4항제5호)

안 제34조의7제4항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운송플랫폼사업자”)에게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회원에게 이 법 및 「도로법」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는 화물운송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,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

그런데, 안 제34조의7제4항제5호는 운송플랫폼사업자가 고지하여야 하는 금지행위를 “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위반하여 화물차주가 화물운송플랫폼에 화물을 등록하는 행위”로 규정하고 있는데, 안 제1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“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”와 문언상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개정안 취지는 운수종사자 중 화물차주가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화물을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을 등록행위 모두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,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화물차주와 관련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금지행위를 안 제12조제1항제7호의2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운수종사자 중 화물차주가 위탁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행위로 수정함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34조의7(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) ① ~ ③ (생략)	제34조의7(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) ① ~ ③ (생략)
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용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,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생략)
5. 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위반하여 <u>화물차주가 화물운송플랫폼에 화물을 등록하는 행위</u>	5. ----- <u>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수종사자(화물차주로 한정한다)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-----</u> -----
7.·8. (생략)	7.·8. (생략)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개정안과 같음)

2.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운송플랫폼사업자 준수사항 준용에 따른 시간적 적용범위 명확화(안 제33조)

안 제3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(안 제34조의7)을 준용하고 있음.

다만, 화물정보망을 통한 화물운송 의뢰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와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사이에 가맹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34조의7의 준수사항을 적용하는 시간적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

바,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시간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<u><신 설></u>	부 칙 제2조(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운수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표현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